受教輯錄과 奴婢의 關한 一硏究

延　正　悅*

〈目　次〉

Ⅰ. 緖　言
Ⅱ. 受敎輯錄의 立法背景과 立法精神
　1. 立法背景
　2. 立法精新
　3. 受敎輯錄의 法源과 編制
Ⅲ. 受敎輯錄의 立法內容
　1. 科擧制度와 官吏의 服務守則
　2. 自主國防 施策의 確立
　3. 稅制의 確立과 그 施行指針
Ⅳ. 奴婢 關聯 立法規定
　1. 奴婢勞雇의 經濟的 機能과 贖良
　2. 奴婢爭訟
　3. 奴婢의 烙刑과 他人妓婢 私役의 器禁
Ⅴ. 結　言

Ⅰ. 緖　言

壬辰倭亂과 丙子胡亂등 두차례에 걸친 國難을 겪고 난 후 國內的으로 安定期에 접어든 朝鮮王朝 第19代 肅宗朝에 들어와 1543年(中宗38年) 制定한 大典後續錄[1] 施行 이후의 傳敎등을 모아 새法典인 受敎輯錄을 編纂하게 되었다.

大典後續錄 制定 이후 150餘年間에 두차례에 걸친 國難과 社會狀의 많은 變遷은 새 法典의 編纂이 不可避하게 되어, 經國大典을 母法으로 하여, 大典後續錄의 立法內容을 補完하여 編纂한 것이 곧 受敎輯錄이다. 勿論 이에 앞서 各司受敎도 있지만,[2] 이 受敎輯錄은 大典後續錄에 이은 名實相符한 大典禮制를 갖춘 새 成文法典이라 하겠다.

受敎輯錄은 經國大典이나 大典後續錄과 같이 吏典, 禮典, 戶典, 兵典, 刑典, 工典등 여

* 漢城大學 敎授

註 1) 大典後續錄이란 1543年(中宗 38年) 大典續錄 이후 52年間 敎令과 六曹의 制令등을 모아 經國大典의 뜻에 따라 編纂한 法典이다.

2) 各司受敎란 1546年(明宗 1年)에서 1576年(宣祖 9年)까지 各司의 敎敎 따위를 모은 法令集이다.

섯개의 法典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大典後續錄 制定後 155年間 내려진 傳敎등을 바탕으로 그 未備點을 補完하여 編纂한 것이다.

國內外 學界에서 아직까지 受敎輯錄에 대한 단 한편의 先行硏究도 없으나, 英祖 20年(1749年) 制定하게 될 續大典 編纂에 큰 影響을 끼친 受敎輯錄은 朝鮮王朝 中葉 成文法典을 理解하는데 있어 必須的이라 하겠다. 本稿에서는 同法典의 立法精神을 究明하고 經國大典이나 大典後續錄등 旣存의 法典등에서 다루지 아니한 未備點을 補完한 몇가지 特色있는 立法內容을 살피고, 受敎輯錄이 朝鮮王朝 他法典에 어떤 影響을 미쳤는가를 살펴 보고자 한다. 그리고 朝鮮王朝 中葉 社會의 法認된 私有財産으로서 土地와 함께 二大基本 財産의 對象이 되었던 奴婢制度와 그에 關聯된 立法規定을 究明하는데 그친다.

Ⅱ. 受敎輯錄의 立法背景과 立法精神

受敎輯錄은 1698年 肅宗의 命을 받아 吏曹判書 李益등이 大典後續錄 施行이후 永久法이 될 수 있는 傳敎를 모아서 엮어 펴낸 法典이다.

1. 立法背景

中宗38年(1543年) 大典後續錄 制定이후 宣祖때 壬辰倭亂과 仁祖때 丙子胡亂등 두차례에 걸친 國難등 全國的인 規模의 戰禍를 두번이나 겪는동안 社會現象에 많은 變化가 있었으며, 朝鮮王朝가 地政學的으로 密接한 關係가 있는 中國大陸의 情勢에도 큰 變化가 일어나 中國本土는 明에 이어 征服王朝인 淸으로 交替되었다. 이같은 와중에도 朝鮮王朝는 對內外的으로 큰 시련을 겪어야만 하였다.

이와같은 國內外的인 諸般要因은 旣存의 大典後續錄의 法秩序 維持에 있어 그 未備點의 補完이 不可避하였고, 그때그때 必要에 따라 朝廷에서는 傳敎로서 새 法令을 制定施行하게 되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國難이후에도 孝宗의 北伐計劃등 大典後續錄 施行이후 公布된 傳敎들을 모아 體系있는 法典을 編纂할 餘裕가 없었다.

肅宗卽位이후 國內的으로 지난날 두차례에 걸쳐 심하게 입었던 戰禍의 상처도 아물고 社會도 安定된 時期라 하겠다. 肅宗은 宣祖이후 계속된 事業인 大同法[3]을 平安道와 咸

註3) 大同法이란 朝鮮王朝 初期 各地方의 土産物로 받치는 貢物을 쌀로 統一하여 받치도록한 貢制의 立法이다.

鏡道를 除外한 全國的으로 施行하게 하였으며, 壬辰倭亂後 계속된 土地改革의 終結과 수전의 通貨에 迫車를 加하는 등 눈부신 業績을 세웠다. 그리고 鴨綠江 一帶에 開拓地 내버려둔 땅을 開拓하는 한편 茂昌과 慈城의 두 鎭을 新設하고 1712年 白頭山 頂上에 定界비를 세워 淸과의 國境線을 確定지었다.

한편 禁衛營을 새로 設置하여 既存의 四營과 함께 五營으로서 兵制를 擴充하여 國防에 萬全을 期하려고 힘썼다.

이같은 內外의 文物制度 整備에 따른 새 立法秩序의 確立의 必要性은 受敎輯錄의 立法背景이 된 諸般要因이 되게 하였다.

2. 立法精神

受敎輯錄 序文에서 自古로 先王의 法을 간직하고 過失없고 忘却없이 舊法規의 由來를 올바로 遵守하는 바탕 위에서 새法을 바로 세울 것을 强調하고 있다.[4]

여기서 舊法規란 經國大典, 大典後續錄등과 같은 既存의 朝鮮의 諸法典을 가리키는 것이며, 先王의 法이란 中宗以後 여러 王들이 制定한 傳敎를 뜻한다.

受敎輯錄의 立法精神은 經國大典과 大典後續錄의 立法精神의 바탕 위에서 새 立法秩序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데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序文에서 지난날 大典後續錄을 펴냄으로서 大典後續錄의 立法精神의 趣旨가 더욱 뚜렷해지게 되었다고 밝힌 점은[5] 이를 뒷받침하여 주는 좋은 解答이라 하겠다. 아무리 좋은 法이라 하더라도 이를 바로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 實益이 없음을 强調, 法의 遵法精神을 强調하고 있다. 序文에서 한때 찬란한 文化를 꽃피웠던 周나라가 衰한 것은 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를 바로 實行하지 아니한데 基因된 것이라 指摘하였다.[6] 여기서 官吏된 者나 百姓이 모두 한결같이 法을 遵守하는데서 社會紀綱이 바로 서고 文化가 發達한다는 點을 환기시킨 점을 엿볼 수 있다.

한편 先王의 政治를 본받아 行하면 國家의 基業이 더욱 튼튼해 지고 長久한 發展이 이루어져 나갈 것임을 想起시키고,[7] 우리 朝廷은 新羅와 高麗의 舊制를 改革하여 禮

註 4) 受敎輯錄 序 參照.

5) 受敎輯錄 序에서 …續錄作而大典爲益明, 輯錄繼而續錄爲益備라고 밝혔다.

6) 受敎輯錄 序에서 成周之 , 非無法也라고 指摘했다.

7) 受敎輯錄 序 參照.

樂과 制度가 光彩를 띄게 빛나며 完全하게 갖추어 졌다고 은연중에 지난 여러 王朝에 비하여 그 文物制度가 完備되었음을 誇示하고 있다.[8] 여기서 先王의 政治를 본받음은 先王들의 傳敎와 經國大典등 朝鮮王朝의 諸法典의 立法精神을 이어 받고 있음을 밝힌 것으로써, 受敎輯錄의 立法精神은 이같은 經國大典등 諸法典과 宣祖以後 歷代 諸王들의 傳敎의 立法精神을 母法의 精神으로 삼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앞서 우리 朝廷은 新羅와 高麗의 舊制를 改革하여, 文物制度를 完璧하게 만들었다고 序文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朝鮮王朝가 다른 舊王朝에 비하여 文物제度뿐만 아니라 특히 受敎輯錄 및 經國大典등 朝鮮王朝의 諸法典이 다른 어떤 舊王朝의 成文法典보다 월등히 뛰어나고 있음을 은연중 誇示한 點을 미루어 三國중 朝鮮王朝는 新羅의 法統을 이어 받고 있음을 밝힌 點이 注目된다고 하겠다.

한편 百姓들의 遵法精神의 본뜻의 根本을 家庭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사랑하게 하는데 있다고[9] 指摘하고 統治者는 國民을 사랑하는 것이 곧 萬物을 사랑하는 바탕이 되며 여기서 風紀와 敎化가 바로 선다는 것이다.[10]

受敎輯錄의 立法精神은 經國大典등 다른 朝鮮王朝 諸法典의 立法精神과 같이 諸王의 德化力을 全國的으로 널리 펴고 國家安危와 儒家의 바탕에 둔 人倫을 바르게 지켜 나가는데 두고 있다.

3. 受敎輯錄의 法源과 編制

1. 受敎輯錄의 法源

受敎輯錄의 法源은 中宗이후 歷代 諸王의 傳敎와 大典後續錄등 成文法에 두고 있다. 그리고 그 編制등은 經國大典의 六典體制에 따라 엮고 있어, 受敎輯錄의 根本法源이 된 母法은 經國大典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한편 序文에서 밝힌바와 같이 受敎輯錄의 編纂은 大典續錄의 立法趣旨를 보다 具體化 시켰으며, 이 大典續錄은 經國大典 立法精神을 더욱 빛나게 해 주었음을 想起하고 있음을 想起하고 있음에서 大典續錄[11] 編纂에 있어 큰 도움을 주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註 8) 受敎輯錄 序

9) 受敎輯錄 序에서 則正家而化國이라고 그 立法精神의 한 斷面을 밝히고 있다.

10) 受敎輯錄 序에서 仁民而愛物, 風敎之순이라고 하였다.

11) 大典續錄은 經國大典 刊行 이후 頒布된 새 法令등을 모아 1492年(成宗 23年) 廣川君 李克增등에게 命하여 恒久的인 法이 될것을 취하며 만든 法典이다.

그밖에도 大典後續錄 經國大典 註解[12]도 參考가 되었다. 그리고 經濟六典[13], 續典[14], 謄典[15] 등의 法典등도 受敎輯錄의 編纂에 參考가 되었다.

太祖가 朝鮮王朝를 建國하던 해인 1932年 朝鮮의 刑事法으로서 明律을 依用施行할 것을 公布[16]한 후, 이 明律을 吏讀文으로 翻譯하여 大明律直解[17]라 일컬어 通用케 하였으며 經國大典 刑典 첫머리에 用大明律의 明文規定을 밝히고 있다.

2. 編制

受敎輯錄의 編制는 經國大典이나 大典後續錄의 編制에 따라 吏典, 禮典, 戶典, 兵典, 刑典, 工典등 六典體制로 짜여져 있다.

吏典은 官職, 除授, 相避, 守令, 供臣, 褒乏, 雜令條등 吏曹所管 115條로 나뉘어져 있으며, 禮典은 科學, 朝儀, 祭禮, 勸奬, 婚禮, 惠恤, 喪葬, 給暇, 立後, 奉祀 雜令條등 禮曹所管 130條로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戶典은 諸田, 搖役, 收稅, 戶籍, 漕轉, 祿俸, 給後, 還上, 解由, 徵責, 作紙, 買賣, 雜令條등 戶曹所管 116條로 나뉘어져 있으며, 兵典은 官職, 軍制, 諸科, 試取, 賞典, 捕虎, 從民, 軍律, 驛路, 廐牧, 烽燧, 兵船條등 兵曹 175條로 나뉘어져 있다.

한편 刑典은 推斷, 濫刑, 僞造, 禁制, 盜賊, 告訴, 殺獄, 檢驗, 奸犯, 赦令, 公賤, 贖良, 補充隊, 聽理, 決獄日限, 文記, 雜令條등 刑曹所管 392條로 나뉘어져 있으며, 工典은 營繕, 雜令등 工曹所管 2條로 나뉘어졌다.

受敎輯錄은 이와같이 六典 都合 986條로 構成되어 있다.

註12) 經國大典註解는 1550年(明宗 5年) 經國大典 가운데 難解한 條項을 뽑아 엮은 註解集이다.

13) 經濟六典은 1397年(太祖 6年) 太祖가 檢詳條例에 命하여 施政의 準則을 定한 法典이다.

14) 續典은 1408年(太宗 8年) 經濟六典 刊行이후 새로운 受敎·條例등을 增補編纂한 法典이다.

15) 謄錄은 1426年(世宗 8年) 續典 刊行이후의 受敎·條例등 一般的으로 行하여지고 있는 것만을 編纂 刊行한 法律書 이다.

16) 明律은 中國 明太祖가 卽位하던 해인 1368年 唐律을 모방하여 엮은 成文法으로서, 李太祖가 朝鮮을 建國한 後 이 明律을 朝鮮의 刑事法으로 依用 施行하였다.

17) 大明律直解는 1395年(太祖 4年) 難解한 漢字로된 明律을 준등에게 命하여 吏讀文으로 번역해 놓은 刑事法典이다.

Ⅲ. 受教輯錄의 立法內容

受教輯錄은 經國大典이나 大典後續錄과 六典體制를 본받아 吏典, 禮典, 戶典, 兵典, 刑典, 工典등 여섯 個의 法典의 形式을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各法典別로 나뉘어 그 立法內容을 살펴야하겠지만 本稿에서는 便宜上 別途의 體系를 세워 다루기로 하였다. 특히 大典後續錄등 既存의 朝鮮王朝 法典에서 다루지 아니한 立法 內容을 간추려 빼어내어 筆者나름의 한 體系를 세워 다루었음을 밝히는 바다.

1. 科擧制度와 官吏의 服務守則

① 科擧制度

朝鮮王朝 官吏採用의 正統코스는 科擧에 合格하여 官界로 進出하는 길이라 하겠다.

科擧의 應試에서 부터 合格에 이르는 過程은 嚴肅하고 公正하도록 受教輯錄 科擧條에 明文으로 規定하고 있다.

科擧가 行하여지는 考査場은 嚴格한 統制와 格式에 따랐는데, 考査場에 들어가는 儒生은 반드시 衣冠을 갖추어야 하며 白衣로 들어가는 것을 許하지 아니하였다.[19] 考査場에서는 큰 소리를 내어서는 아니되며, 應試중 다른 受驗生에게 말을 건네거나 곁눈질을 禁하였다.[20]

考査場의 秩序를 害친 應試者인 擧子에 대한 受教輯錄 禮典 科擧條에 罰則規定을 두었다.[21] 그러나 合格의 當落에는 영향은 없다.[22]

科擧途中 不正을 犯한 應試生인 擧子가 不正行爲가 있을 경우 永久히 科擧應試 資格을 박탈하였다.

科擧에 代理試驗을 부탁한 者나 代理試驗을 본 者는 勿論 서로 協同하여 試驗紙를 바꾸어 作成한 者는 不正行爲로서 試驗이 無效뿐만 아니라 永久히 應試資格이 停止된다.[23]

註18) 經國大典 刑典 用大明律條 參照.

19) 受教輯錄 禮典 科擧條 大小場屋, 儒生白衣者, 勿許入場이라고 밝혔다.

20) 受教輯錄 禮典 科擧條

21) 受教輯錄 禮典 科擧條 凡科物, ……罪在擧子則罪擧者라고 規定하고 있다.

22) 受教輯錄 禮典 科擧條에 罪在擧子則罪擧者, 勿爲龍榜이라고 밝혔다.

23) 徙邊이란 一家族 國境과 같은 邊方으로 옮겨 살게하는 刑이다.

試驗官으로서 不正採點을 한 경우 그 官員은 全家族 徙邊[24]의 刑에 處하였다.[25] 昇進考試인 重試 應試者로서 기복상을 當하였을 경우 喪이 끝날때 까지 應試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朝鮮社會의 人倫에 바탕을 둔 儒家社會의 價値觀의 한 基準을 엿볼 수 있다.

한편 科擧에 應하려는 儒生은 반드시 그 戶籍에 儒生入籍이 登載토록 하였다.[26] 여기서 朝鮮社會 밑바탕에 儒家의 文을 숭상하였던 그 흐름을 엿볼 수 있다.

科擧에서 쓰이는 用語는 奇僻나 語句나 文體를 避하여 出題하였으며[27], 應試者도 科場에서 答案紙 作成에 있어 위와 같은 次元에서 作成토록 하였다.

이것은 科擧의 公正性과 보편성을 유지하기 위한 立法措置라 하였다.

② 官吏의 服務守則

中央의 官司 및 地方 官衙에서 服務하는 官吏를 莫論하고 徑出[28]하여 宿直의 任務를 등한히 한 者에게 罪를 물었으며, 地方官으로서 그 고장 鄕敎의 位牌를 破毁한 者를 檢擧하지 아니한 者는 罪를 물어 處罰토록 規定하고 있으며 그 守令된 者는 罷免토록 하였다.[29] 이같은 立法規定은 儒家의 精神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취하여진 한 立法措置라 하겠으며, 그 一環으로서 綱常罪[30]을 犯한 守令은 그 職에서 罷免토록한 立法規定[31]에서도 엿볼 수 있다.

官吏의 不正을 未然에 豫防하기 위하여 錢穀과 傳掌에 關係된 官司의 官吏된 者와 地方官인 守令, 使, 萬戶등의 外方의 文武官僚들과 相避[32]하도록 立法規定을 두었다.[33]

그리고 그 고장 守令과 그 고장 駐屯 兵馬使도 相避토록 하였으나[34] 그 고장 水使와

註24) 受敎輯錄 禮典 科擧條 參照.

25) 受敎輯錄 禮典 科擧條.

26) 受敎輯錄 禮典 科擧條에 儒生, 必入籍, 然後, 許赴.

27) 受敎輯錄 禮典 科擧條에 科擧用語錄及奇僻之語變易文體者, 一切禁斷이라 밝혔다.

28) 徑出이란 宿直 또는 日直의 番에 當할 者가 交代時間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退出하는 것을 말함이다.

29) 受敎輯錄 吏典 雜令條

30) 綱常罪란 三綱·五倫에 違反한 罪

31) 受敎輯錄 吏典 雜令條

32) 相避란 一家親戚이 한 官衙에서 同官으로 勤務하는 것을 避하는 것이다.

33) 受敎輯錄 吏典 相避條.

34) 受敎輯錄 吏典 相避條 參照.

守令은 相避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토록 例外規定을 두었다.[35]

한편 淸나라에 派遣되는 使節團 代表인 使臣과 書狀官은 서로 相避토록 吏典에 立法으로 規定하여[36], 萬의 하나 國益을 害하는 일이 없도록 한 豫防的인 法 規定이라 하겠다.

朝鮮王朝는 淸나라에 每年 定期的으로 1年에 네차례씩 使節團을 派遣하였다.[37]

이같은 年例行事는 지난날 明나라에서[38] 淸나라로 이어진 兩國間 儀典行事의 하나이었다. 地方官으로서 그 고장 百姓들에게 獨斷的으로 法에 없는 民結[39]이나 稅率을 함부로 策定 賦課하거나 潛奸의 行爲가 摘發되면 罪를 물어 罷免하도록 하였다.

經國大典에서 百姓들에게 賦役을 年6日로 하고 이를 超過할 경우 그 고장 地方官은 朝廷의 事前 許可를 얻도록 하여[40] 地方官들의 民弊를 막으려는 豫防立法精神과 일맥상통한다 하겠다.

都事, 守令, 察訪등의 官吏들의 殘邑이나 薄俸을 忌避하여 任地에 赴任하지 아니 할 경우 그 任地에서 3年 期限으로 定配토록 立法으로 밝혔다.[41]

한편 官員됨을 싫어하여 官職을 버리고 避한 者는 그 고장 守令이 체포하여 신문한 뒤 邊方의 軍人으로 充員토록 하였다.

受敎輯錄을 補完하여 編纂한 新補受敎輯錄[42]에서는 帳簿를 上級官衙에 上送할 경우 반드시 그 書類를 完璧하게 編綴하고 堅固하게 封印한뒤 別途로 官吏를 指定하여 傳하도록 公文書 送達의 服務守則을 規定하고 있다.[43]

承傳色[44]으로서 各 行政, 司法官司에서 王命을 傳함에 怠慢이 있을 경우, 그 關聯

註 35) 受敎輯錄 吏典 相避條

36) 受敎輯錄 吏典 相避條에 書狀·使臣, 互爲相避라 하였다.

37) 朝鮮王朝는 每年 淸나라와 定期的으로 4차례씩 元旦使, 聖節使, 千秋使, 冬至使 등의 名稱으로 使節團을 派遣하였다.

38) 延正稅 著 韓國法制史 251面, 서울 學文社 1984年.

39) 民結이란 百姓의 田畓에 대한 課稅基準을 定하는데 있어 稅의 賦課額을 뜻한다.

40) 受敎輯錄 吏典 守令條.

41) 受敎輯錄 吏典 守令條 參照

42) 新補受敎輯錄이란 1743年(英祖 19年) 受敎輯錄에 빠진 傳敎등을 모아 엮은 法典이다.

43) 新補受敎輯錄 吏典 雜令條

44) 承傳色이란 王命을 傳達하는 內侍部의 一職員이다.

承傳色의 責任을 물어 罷職한다.[45]

新補受教輯錄에서는 地方官으로서 貯藏米를 濫用하거나 私服을 취하였을 경우 이 事實이 뒤늦게 들어나게 되면 그 정상에 따라 臧律治罪로서 罪를 물어 처벌하도록 밝히고 있다.[48]

地方官으로 同職에서 轉出할 경우 後任者는 前任者로 부터 事務引受引繼에 앞서 帳簿調査를 하여 事實과 다름이 없을 때 비로소 責任解除證書를 發給토록 하여[49] 地方官의 不正을 막기 위한 立法措置를 마련하였다. 이같은 立法規定은 京官[50]에게도 適用토록 하였다. 한편 各官衙에서 上級官司에 報告時 數字의 加減과 같은 虛僞報告를 한 경우 그 該當官員을 罷職토록 하였다.[51]

2. 自主國防 施策의 確立

壬辰倭亂과 丙子胡亂등 두차례에 걸친 國難을 겪고난 후 孝宗은 淸에 대한 丙子 國恥의 수모를 回復하기 위하여 오랜 北伐準備를 꾀하였으나 끝내 그 計劃을 實現에 옮기지 못한채 王의 薨[52]으로 代를 이은 肅宗이니만치 自主國防 施策인 先王의 政策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비록 先王인 孝宗의 北伐計劃의 實踐은 포기하였지만 自主國防 態勢는 繼續 國策으로 이어져 受教輯錄 兵典 立法規定에 反映되고 있다.

한편 對北인 淸나라 뿐만 아니라 남쪽의 倭에 대한 防備策으로 大典續錄과 大典後續錄 兵典 兵船條의 未備點을 補完 하였다.

① 軍制의 整備

壬辰倭亂과 丙子胡亂의 두 큰 戰爭을 겪으면서 戰時중 烽燧運用이 滿足하게 다루어지지 아니한듯 하다. 이것은 受教輯錄 兵典 烽燧條의 立法規定에서 엿보인다. 아무리 烽

註45) 受教輯錄 吏典 雜令條

46) 新補受教輯錄 吏典 守令條 參照

47) 여기서 侵食이란 官吏된 者가 官物 따위를 착복하는 行爲를 가리키는 것이다.

48) 新補受教輯錄 吏典 守令條 參照

49) 受教輯錄 吏典 解由條

50) 京官이란 中央官司의 官吏를 뜻한다.

51) 受教輯錄 後典 解由條

52) 薨이란 王의 죽음을 뜻한다.

燧施設이 잘되어 있더라도 이를 運用하는 烽燧軍의 怠慢과 같은 服務守則이 제대로 행하여 지지 아니할 경우 烽燧制度가 쓸모가 없다.

經國大典 兵典에도 烽燧의 立法規定을 두고 있었으나 壬辰倭亂時 이 立法規定이 無色하였던 것이다.

이같은 前例에 비추어 烽燧軍士는 勿論 該當地域의 守令과 鎭將에게 까지 責任을 强化 受敎輯錄 兵典 烽燧條에 嚴한 罰則 規定을 두고 이를 위반 할 경우 最高 斬刑까지 處하였다.[53]

賊이 出現하였는데도 烽燧을 올리지 않으면 該當 烽燧軍士는 枚 80 刑에 處하며[54] 鎭將은 70 刑에 處한다.[55] 그리고 賊이 境界를 犯한 경우 烽燧를 올리지 않으면, 烽燧軍士는 杖百刑에 處하고 邊方으로 좌천 시킨다.[56]

한편 守令과 鎭將은 杖百刑에 處하여지며[57] 同職에서 罷職된다.[58] 그리고 다시 再任되지 못하도록 嚴한 規定을 두었다.[59]

賊과 接戰중 烽燧을 올리지 않으면 烽燧軍士는 勿論 守令과 鎭將 모두 極刑인 斬刑에 處한다.[60] 經國大典 兵典 烽燧條에 平時에는 烽燧한개, 賊의 出現時 두 개, 賊이 근처에 接近時 세개, 賊이 境界안에 들어오면 네개, 接戰중에는 5개를 올리도록 明文으로 規定하고 있다.[61]

受敎輯錄 兵典 烽燧條에 烽燧軍을 2隊로 나누어 交代 勤務토록 規定하여[62] 圓滑한 烽燧軍運用을 꾀하였다. 그리고 烽燧施設이 훼손된 該當 守令에게 杖 80 刑에 處한다.[63] 한편 前近代戰 防禦 施設인 城廓築造 및 運用의 效率化를 꾀하기 위해 大典後續錄 兵典 城堡條에 各鎭의 城廓築造時 堅固하게 쌓도록 그 實行 實務責任者인 從事官은 城을

註 53) 受敎輯錄 兵典 烽燧條 參照
54) 受敎輯錄 兵典 烽燧條에 賊現形不擧烽燧杖八十이라 밝혔다.
55) 受敎輯錄 兵典 烽燧條에 賊現形不擧烽燧 … 鎭將杖七十이라 하였다.
56) 受敎輯錄 兵典 烽燧條 參照
57) 受敎輯錄 兵典 烽燧條
58) 受敎輯錄 兵典 烽燧條
59) 受敎輯錄 兵典 烽燧條 參照
60) 受敎輯錄 兵典 烽燧條에 賊到處不報火烽, 依軍法處斬後啓聞이라 하였다.
61) 經國大典 兵典 烽燧條 參照
62) 受敎輯錄 兵典 烽燧條…… 分二番相遞라고 밝혔다.
63) 受敎輯錄 兵典 烽燧條 參照

한지 5년이 經過하여 허물어지지 아니하면 一資[64]를 昇級시키나[65] 期間內 허물어지면 從事官 以下 關聯官員을 罷職시킨다.[66] 한편 城門을 守直하는 軍士가 夜間勤務를 怠慢이 한 경우 杖60刑 徒1年刑에 處한다.[67] 城門이 아닌 城을 타고 넘는 者는 重罰에 處하며[68] 守衛軍士로서 同罪를 犯한 경우 효시[69]에 處한다.[70]

國境地方과 海岸地方의 邊將이 交替時 새 赴任者가 赴任해와 事務引受 引繼를 끝낸후 비로소 鎭을 떠나도록 邊將服務守則을 規定하고 있어[71] 不意의 事態에 對備토록 하였다. 그리고 各營의 將官은 每年 試射를 定期的으로 行하도록 하여 射擊術 練磨에 힘을 기우리도록 하였다.[72] 少年兵이나 身體虛弱者를 軍에 入隊케 한 守令은 杖80刑에 處하며[73], 制書有違律로 다스리도록 하였다.[74]

이같은 立法措置는 精銳 强兵을 養成하기 위함이다.

한편 軍士訓練時 食物 따위와 같은 軍需物資를 착복한 關聯將校는 大辟[75]인 斬刑에 處하며[76], 該當地域의 觀察使와 兵馬使는 罷職시킨다.[77]

當時 陸戰에 있어 必須的인 機動力인 戰馬를 飼育 번식시키기 위해 各地方에 分散, 分養馬를 飼育하는 官員인 4匹以上 傷하게 한 경우 그 該當 官員은 罷職시켰다.[78]

한편, 西北[79] 出身으로 邊將으로 任命할 경우 道를 바꾸어 配置토록하였는데[80], 이

註64) 資란 오늘날 號俸에 該當됨.
65) 大典後續錄 兵典 城 條 參照
66) 大典後續錄 兵典 城 條
67) 受教輯錄 兵典 軍律條 參照
68) 受教輯錄 兵典 軍律條에 越城者 出入同罪라 밝혔다.
69) 受教輯錄 兵典 軍律條에 越城者 出入同罪, 而守衛軍兵犯此罪者라 하였다.
69) 示란 罪人을 斬하여 그 首級을 높이 걸어놓아 많은 사람으로 警戒心을 갖게 하는 것이다.
70) 受教輯錄 兵典 烽燧條에 ……不待時軍門 示라 밝히고 있다.
71) 受教輯錄 兵典 官職條에 營將交代後離鎭이라 規定하였다.
72) 受教輯錄 兵典 試取條
73) 受教輯錄 兵典 軍律條
74) 受教輯錄 兵典 軍律條 參照
75) 大辟이란 死刑을 뜻한다.
76) 受教輯錄 兵典 軍律條
77) 受教輯錄 兵典 軍律條
78) 受教輯錄 兵典 軍律條 參照
79) 西北이란 平安道와 咸鏡道를 뜻한다.
80) 受教輯錄 兵典 廐牧條

는 西北人의 性情이 사나워 中央朝廷에 대한 敵對行爲를 未然에 豫防키 위한 高等立法措置라 하겠다.

肅宗은 지난날 壬辰倭亂 當時 國難에 處하여 있을 때 指導階層인 文官들이 보여준 敵에 대한 미약한 작태를 개탄 文官들에게 平常時 國土防衛의 尙武精神을 선양키 위한 一環으로 文臣에게 每月初 試射토록 하고[81] 病을 稱탈하고 試射에 參與하지 아니한 경우 모두 罷職하도록 하였다.[82] 夏節期와 같은 日長時에는 15巡을, 冬節期와 같은 日短時 10巡을 定式으로 施行하였으며, 6卿[83] 중에서 交代로 試官을 任命하였다.[84]

② 兵船 運用指針

水軍의 核心인 兵船의 效率的 管理를 위하여 平常時 兵船의 훼손으로 有事時 가동이 不可能하지 아니하도록 그 監督에 철저를 期하도록 하였다.[85] 戰船建造後 法定 就役 期間內 戰船이 腐敗 훼손되었을 경우 關聯軍官에게 監督不充分 罪를 물어 杖刑 百刑에 處하며[86] 兵船의 機動力이 현저하게 떨어진 경우도 關聯軍官에게 責任을 물어 杖百刑에 處하였다.[87] 戰船과 兵船의 就役에 차질이 없도록 建造후 一定期間이 지나면 改補修토록 受敎輯錄 兵典 兵船條에 明文으로 밝혔다.[88] 그 期間은 湖南과 湖西에 屬한 三道水軍鎭營의 戰船과 防兵船[89]은 建造後 30個月이 經過하면 노나 部屬 따위를 改補修하여야 하며[90] 60個月이 經過되면 全面 改造하도록 하였다.[91]

그리고 嶺南左道는 60個月, 嶺南右道는 80個月이 經過되면 戰船과 兵船을 改造하여 有事時 對備토록 하였다.

註 81) 受敎輯錄 兵典 試取條.
82) 受敎輯錄 兵典 試取條 參照.
83) 受敎輯錄 兵典 試取條 參照.
84) 受敎輯錄 兵典 試取條 參照.
85) 受敎輯錄 兵典 兵船條 參照.
86) 受敎輯錄 兵典 兵船條에 守令營將, 戰船未限滿前腐傷動退者 一百이라고 規定하고 있다.
87) 受敎輯錄 兵典 兵船條.
88) 受敎輯錄 兵典 兵船條
89) 防兵船이란 巡視船이다.
90) 受敎輯錄 兵典 兵船條.
91) 受敎輯錄 兵典 兵船條.

新補受教輯錄 兵典 兵船條에는 兵船改修價와 改造價를 策定, 兵船改補修費의 策定을 法律로 規定까지 하였으며[92] 水軍으로서 오늘날 公海의 槪念에 該當하는 外洋에 出港하여 바람직한 몸가짐을 하지 아니한 경우 杖刑에 處하였다.

國防의 要衝地인 首都 漢陽城의 關門이 江華府의 甲串津에 配置된 戰船은 每年 3隻式 隨時로 卽刻 造兵廠에서 修理補修 토록하여[93] 首都外廓 방어를 꾀하였다.

3. 稅制의 確立과 그 施行指針

① 戶籍 申告 制度

朝鮮王朝에 있어 百姓들이 國家에 대하여 지는 納稅義務로서는 役[94]과 貢[95], 稅[96] 등으로 가름된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機械가 發達하지 않은 그 時代에 있어서는 城廓의 築城이나 堤防의 修築과 같은 큰 工事도 人力에 의하지 않을 수 없는 社會이기에 百姓들의 賦役은 國家的 大規模 工事에 있어 중요한 要素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朝廷에서는 百姓들의 脫役을 防止하고 그 效率的인 運用을 위하여 戶典에 그 明文規定을 밝히고 이를 違反한 者에게 그 罪를 물어 處罰하였다.[97]

앞서 經國大典에서 모든 良民인 百姓은 年間 6日의 勞役 義務를 規定하고 있었다. 그러기에 朝廷은 國家의 稅收 및 國家의 基幹建設의 한 要因인 百姓들의 脫役을 막기 위하여 受教輯錄에서도 大典後續錄등 旣存의 諸法典의 未備點을 補完하여 百姓들의 脫役의 빈틈을 주지 않도록 힘쓴점이 그 立法內容에서 엿볼 수 있다.

漢城府 戶籍簿에 누락된 者의 경우는 戶曹에 移牒[98]하여 相考[99]하여 分揀[100]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良民이 아닌 者는 公賤이든 私賤이든 間에 奴婢籍에 登載되어[101] 良

註 92) 受教輯錄 兵典 兵船條.
93) 新補受教輯錄 兵典 兵船條.
94) 役이란 百姓에 賦課하는 勞役이다.
95) 貢이란 그 고장 特産物을 朝廷에 받치는 것이다.
96) 稅란 米로서 稅金을 내는 것이다.
97) 受教輯錄 戶典 戶籍條.
98) 移牒이란 다른 官司로 一件의 文書一切을 넘겨 주는것.
99) 相考란 서로 비교하는것.
100) 分揀이란 가름한다를 뜻한다.
101) 延正稅出著 前揭書.

民戶籍簿의 登載에서 除外되었다. 이 奴婢는 土地와 함께 當時 重要財産權의 하나이었다.[102]

戶籍에 登載되지 않은 者로서 摘發된 경우 軍役에 編入토록 하였다.[103] 脫役을 하기 위하여 實在年齡 보다 加減을 하여 該當官衙에 申告하였다가 뒤늦게 이 虛僞事實이 발각되면 虛僞申告 年齡이 實在 年齡보다 1年의 差異가 있으면 그 當事者와 그 戶口의 家長은 杖刑 百刑에 處하며[104] 實在 年齡보다 3年의 差異가 날 경우 杖百刑과 徒3年 刑에 處하였다.[105] 그리고 그 申告 年齡과 實在 年齡과의 差異가 5年인 경우 軍에 充員토록 規定하고 있다.[106]

한편 賦役에 該當된 壯丁을 戶籍에서 故意이나 過失을 莫論하고 누락시켰을 경우, 이 事實이 뒤늦게 들어나면 그 該當 壯丁은 家長에게 責任을 물어 누락된 壯丁이 1명인 경우에는 그 家長은 杖百刑과 徒3年刑에 處하며[107] 누락된 壯丁이 2名인 경우는 그 家長을 軍에 入屬하게 하였다. 그리고 3名 以上인 경우 全家族을 徙邊토록 規定하고 있다.[108] 家長이 同一戶籍內 壯丁의 數를 申告토록한 立法規定은 일찌기 前王朝의 立法인 全文 71條의 高麗律[109]에서도 그 立法內容을 찾아 볼 수 있는데[110], 高麗律에서는 9等分의 差를 두어 實施한바 있다.[111] 그리고 同律에서도 家長의 申告義務와 罰則規定을 두고 있었다.[112] 한편 各 고을 里正[113]들은 各 戶口의 家長들이 바르게 申告토록 指導하여야 하며, 虛僞申告와 그 기미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그 고을 守令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脫役壯丁이 1人이 摘發되었을 경우 杖 80刑의 體刑을

註 102) 延正稅出著 前揭書.
103) 受敎輯錄 戶典 戶籍條 參照.
104) 受敎輯錄 戶典 戶籍條.
105) 受敎輯錄 戶典 戶籍條.
106) 受敎輯錄 戶典 戶籍條.
107) 受敎輯錄 戶典 戶籍條.
108) 受敎輯錄 戶典 戶籍條.
109) 高麗律은 全文 502條의 唐律을 高麗實情에 맞게 全文 71條로 가려 뽑아 엮은 成文法典이다.
110) 延正稅出著 前揭書.
111) 延正稅出著 前揭書.
112) 延正稅出著 前揭書.
113) 里正은 地方 고을에서 守令을 도와 戶籍 따위와 같은 事務를 補助하는 오늘의 統長과 같은 일을 하는 者이다.

받게 된다. 壯丁들의 脫役數에 따라 加重處罰을 받게 되며, 뇌물을 받고 壯丁의 脫役을 눈감아 주거나 그 고을 守令에 이 事實을 報告하지 아니한 里正은 重刑에 處하도록 하였다.[114]

② 租 稅

朝鮮王朝의 稅收入은 鹽(염), 人蔘등과 같은 專賣收入과 百姓들의 稅貢으로 크게 가름된다.

鹽은 당시 중요한 國家稅收入源의 하나로서 鹽商에 대한 鹽盆稅를 賦課하였으며[115] 蔘商과 捉魚所에서 고기를 잡는 者에게도 稅金을 賦課하여 國庫와 地方稅로서 充當하였다.

定着民이 아닌 山間地帶로 떠돌아다니는 流浪民들의 脫役 脫稅을 막기 위하여 地方의 守令들은 이를 團束토록 하였으며[116], 이들 流浪民들의 團束은 실제로 어려웁기 때문에 各地方 守令과 守令間에 住民들의 退去轉入을 照會토록하여 流浪民들의 團束에 철저를 期하도록 立法規定까지 두었다.[117] 地方의 田稅의 公正을 期하기 위하여 起耕田과 荒蕪地를 分明히 가늠토록 監官들이 服務守則을 밝혀 起耕田을 荒蕪地로하여 田稅의 대상에서 누락되게 하여 私利를 취하거나, 荒蕪地를 起耕田으로 조작하여 民弊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警戒하였다.

이 경우 이를 故意的으로 違反한 事實이 뒤늦게 들어나면 每1負에 대하여 杖10 刑의 身體刑에 處한다.[118]

한편 樹林등 自然을 保護하기 위하여 山허리 이하의 舊田에 대하여서는 繼續耕作을 許하나 산중턱위 地帶에는 耕作을 禁하고, 山허리 이하의 地帶라도 새로히 나무를 베어내고 새로 田畓을 일구는 行爲를 一切 禁하였다.[119] 이를 違反하였을 경우 犯法者를 處罰하였다.

田稅와 關係되는 事項으로서 平安道와 黃海道에 所在한 田畓은 宮家[120]에서 所有함을 禁하는[121] 한편 民間에서 3年이 지난 묵은 밭을 他人에게 耕作을 허락한 경우 永久

註 114) 受敎輯錄 戶典 戶籍條.
115) 延正稅出著 前揭書 參照.
116) 受敎輯錄 戶典 戶籍條 參照.
117) 受敎輯錄 戶典 戶籍條.
118) 受敎輯錄 戶典 諸田條.
119) 受敎輯錄 戶典 諸田條 參照.
120) 宮家란 王室을 뜻한다.
121) 受敎輯錄 戶典 諸田條에 兩西田畓, 諸宮家切勿許折受라고 밝히고 있다.

히 주는 것이 아니면, 밭 主人이 近還請求가 있을 때 까지 耕作토록[122] 受敎輯錄 戶典 諸田條에서 明文으로 耕作者의 利益을 保護하고 있다.

Ⅳ. 奴婢 關聯 立法規定

奴婢는 朝鮮王朝 社會의 土地와 함께 二大 生産要素로서, 奴婢는 土地와 함께 個人의 그 所有權에 대한 登記制度를 採擇하고 있었다. 즉 奴婢와 土地 所有權의 登生·變更·消滅등은 반드시 官司에 申告를 하여야하며 官司로 부터 그 文券을 交付 받음으로써 비로소 그 法的效力이 發生하게 된다.

朝廷 官司는 이와같이 奴婢와 土地의 登記法를 備置하고, 이 登記法에 登載된 者의 所有權을 法認해 주는 根據로 삼았다. 奴婢의 所有權은 奴婢籍에 登載된 경우에만 正當한 所有權者로서 善意의 第三者에게 對抗할 수 있다.

奴婢籍은 公賤과 私賤으로 가름되며, 여기서 公賤이란 各官衙에 예속된 奴婢이며 私賤은 個人 所有의 奴婢이다. 여기서 個人의 所有權의 對象이 되는 私賤은 朝鮮王朝 社會의 土地와 함께 所有權 紛爭이 되는 爭訟[123]의 大宗을 이루고 있었다.

奴婢爭訟이 이같은 朝鮮王朝 社會의 爭訟의 大宗을 이루고 있었던 그 큰 한 要因은 奴婢勞雇가 朝鮮王朝의 土地와 함께 財貨로서 뿐만아니라 農耕社會인 朝鮮王朝 時代 生産構造로 보아 絶對的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奴婢勞雇는 朝鮮王朝 時代의 중요한 經濟要素인 財貨이기 때문에 그 利害는 兩班社會의 絶對的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奴婢 文券은 奴婢爭訟의 疏明資料의 基準이 되었다.

奴婢의 所有權은 兩班社會의 土地와 함께 富를 가름하는 財貨이기 때문에 奴婢의 身分을 벗어나 良人의 身分을 回復하기란 期待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같은 꽉 짜여진 身分制度下에서도 奴婢 身分을 벗어나 良人의 身分을 取得할 수 있는 贖良 그에 따른 立法規定을 두고 있었다.

註 122) 受敎輯錄 戶典 諸田條에 過三年陳田, 許人告耕者, 非謂永給, 特本主還推問, 姑許耕食이라 하였다.

123) 爭訟이란 오늘의 民事訴訟에 該當됨.

1. 奴婢勞雇의 經濟的 機能과 贖良

① 朝鮮社會의 生産構造와 奴婢勞雇의 特性

農耕社會인 朝鮮王朝 社會는 土地와 함께 奴婢는 二大生産 要素이다.

當時 奴婢는 雇는 人間의 尊嚴性을 法認하고 있는 오늘의 從屬勞動[124]의 勞動槪念과는 그 特性을 달리하는 단순한 生産手段이나 生産 道具에 不過하다.

奴婢勞雇는 農耕 뿐만 아니라 當時 朝鮮社會의 各種 肉體 勞雇를 거의 도맡다시피 하였으며, 兩班家의 家事勞雇뿐만 아니라 婢女는 賤妾으로서 兩班들의 노리개의 구실 까지 하였다.

이 奴婢勞雇는 勞雇 提供의 反對給付로서 賃金이나 報酬를 받지 못하는 단순한 生産手段 또는 生産道具로서의 財貨에 不過하였다.

② 賤子隨母法과 贖良

財貨인 奴婢를 兩班階層에서 自己所有의 奴婢를 선선히 贖良을 許할리가 없었다.

그러나 奴子가 良人出身의 妻로 맞이하며 出生한 子에 대하여서는 그 身分을 母의 身分을 따르도록 賤子隨母法을 法認하고 있었다.[125]

이같은 立法規定은 新補受敎輯錄에 明文으로 밝히고 있다.[126]

朝鮮初期 한때 實施 되었던 從父法[127]과 對照를 이루고 있다.

그밖에도 補充隊[128]에 編入하게 되면 賤役을 免하고 良役을 取得하게 되나 이같은 경우도 그다지 많은 形便은 아닌듯 하다.

③ 賞과 免賤

官司로 부터 指名手配된 犯人을 捕告한 奴婢는 그 賞으로 免賤을 하여 良人의 身分을 取得할 수 있다.[129]

註 124) 沈泰植著, 勞動法槪論 33面, 서울 法文社, 1989.

125) 新補受敎輯錄 刑典 贖良條 參照.

126) 新補受敎輯錄 刑典 贖良條.

127) 從父法이란 子는 아버지의 出身 身分을 따르는 法.

128) 補充隊란 軍役의 一種으로서, 賤役으로 構成된 部隊.

129) 新補受敎輯錄 兵典 賞與條.

이같은 立法規定은 일찌기 高麗律[130]에서도 이와 유사한 立法 規定을 갖고 있었다.[131] 그러나 高麗律에 의하면 도적을 잡은 奴婢는 그 賞으로 免賤이 되어 良人의 身分을 取得하게되나 그 當事者인 奴婢의 所生은 또다시 還賤하게 된다.[132] 그러나 이 受敎輯錄의 立法規定에서는 本 當事者 뿐만아니라 그 所生도 良人의 身分을 갖도록 하고 있다.

한편 奴子로서 호랑이를 捕獲한 경우 官司로 부터 論賞을 받도록 規定하고 있었다.[133] 당시 虎患이 심하여 地方守令은 호랑이를 捕獲하도록 行政細則으로까지 밝히고 있었다.[134] 이같은 극심한 虎患은 奴子로서 人命을 害친 호랑이를 捕獲하였을 경우, 그 정상에 따라 免賤을 許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生命刑을 減刑 당하여 流配刑을 받고 있는 者로서 호랑이를 捕獲하였을 경우 그 功勞로 放免한다는 立法規定을 미루어 보아 위의 경우 奴子에게 免賤의 賞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한편 奴婢로서 朝廷의 許可를 받지 아니한 參商을 官可에 告發한 者에게 論賞하도록 規定하고 있었다.[135]

參商은 반드시 戶曹로 부터 許可를 받아 朝廷으로 부터 帖文[136]을 받은者만이 參의 商行爲를 할 수 있었다.

특히 北쪽 國境地帶인 江界地方에서 朝廷의 許可없이 參商을 하다가 摘發되면 斬刑에 處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당시 明·淸과 國境을 接하고 있는 北쪽 國境地帶에서의 參商의 마진이 얼마나 높았음을 엿볼 수 있다.

한편 朝廷의 許可없이 鴨綠江을 渡江하다가 적발되면 杖刑 百刑에 處하였다.

2. 奴婢爭訟

① 奴婢爭訟과 決獄日限

奴婢爭訟은 一番開始로 부터 判決日까지 50日로 하되, 刑官의 公休日등과 같은 日數는 여기서 除外된다.

註 130) 全文 502條의 唐律을 高麗實情 맞게금 全文 71條로 뽑아 編纂한 成文法이다.
131) 延正稅出書 前揭書 63面.
132) 延正稅出書, 63面 參照.
133) 受敎輯錄 兵典 捕虎條 參照.
134) 受敎輯錄 兵典 捕虎條.
135) 新補受敎輯錄 刑典 禁制條.
136) 新補受敎輯錄 刑典 禁制條 參照.

奴婢爭訟은 原則的으로 3番이나 再番 또는 3番은 반드시 刑曹에서 審理하도록 受敎輯錄에 明文으로 밝혔다.[137]

刑曹는 奴婢爭訟이 開始된 後 30日內 訴訟當事者들은 法廷에 出頭하도록 律로서 規定하며 奴婢爭訟의 延滯現象이 發生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138]

3覆審에서 敗訴한 奴婢爭訟은 다시 聽理할 수 없으며, 同一事件을 그 親族들이 面을 바꾸어 奴婢爭訟을 提起할 경우 同事件은 繫訟으로 看做 訴訟回數에 包含시키도록 하며[139] 요행이나 不必要한 爭訟行爲를 立法으로 根絶시키려고 하였다.

한편 誤判된 事件은 他官司로 移牒되었을 경우 그 誤判된 奴婢爭訟은 訴訟回數에 包含시키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② 奴婢爭訟의 時效

奴婢爭訟의 時效는 原則的으로 30年이다.

이 期間이 經過되면 時效滿了로서 奴婢 爭訟을 提起할 수 없다. 土地에 關聯된 爭訟의 時效도 이와같다.

그러나 奴婢爭訟에 있어 그 時效가 비록 30年이 經過하여 50年이 되더라도 逃亡하여 누락된 公賤의 推刷와 같은 事件은 그 時效의 適用에서 除外 되었다.[140] 여기서 推刷란 他地方으로 도망간 奴婢를 잡아서 본래 도망가기 前 고장으로 돌려 보내는 것이다.

公賤으로 도망가 他地方에서 私賤이나 良民의 行勢를 하다가 摘發되면 推刷되어 본래 屬하여 있던 고장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이같은 경우 그 奴婢의 爭訟은 그 時效와 관계없이 裁判을 받게 된다.

③ 詞訟과 刑官

詞訟이란 오늘날 民事訴訟을 뜻한다.

奴婢爭訟은 勿論 모든 詞訟事件 審理擔當刑官은 自身과 利害關係人이 되는 者의 事件을 審理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가리켜 詞訟의 相避라고 한다. 이와같이 詞訟을 相避

註 137) 受敎輯錄 刑典 決獄日限條.
138) 受敎輯錄 刑典 決獄日限條 參照.
139) 受敎輯錄 刑典 決獄日限條.
140) 受敎輯錄 刑典 決獄日限條 參照.

하여야할 경우 同事件을 他官司로 移牒하여 審理하도록 하였다.[141] 여기서 相避란 事件審理를 맡은 刑官이 訴訟當事者 一方의 親族이나 師弟間인 경우 訴訟의 公正을 期하기 위하여 그 事件의 審理를 맡지 못하도록 立法으로 規定하고 있었다.[142]

한편 刑官은 訴訟事件이 滯訟되는 일이 없도록 規制하고 있었다.[143]

奴婢爭訟을 包含한 모든 詞訟은 判決終結 結果를 上級機關에 明文으로 規定하여 滯訟을 根絶토록 하였다.[144] 그리고 訴訟이 提起된 後 1年이 經過되도록 判決을 내리지 못한 事件으로 그 期間중 한번도 審理한 일조차 없는 경우 關聯 該當 刑官에게 그 責任을 물어 論罪토록 하였다.[145]

3. 奴婢의 烙刑과 他人奴婢 私役의 嚴禁

奴婢의 도망 豫防과 自己 所有의 奴婢를 他人에게 識別시키기 위하여 奴婢身體 부위에 烙刑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같은 身體 부위에 烙刑을 한 지난날의 경우를 보면 高麗時代 罪囚에게 烙刑을 한 例를 찾아 볼 수 있다.

受敎輯錄에서는 이같은 奴婢에게 烙刑을 하는 것을 立法으로 禁하였다.[146]

비록 奴婢가 財貨의 一種이라고는 하나 짐승과 같이 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朝廷의 意志를 나타낸 立法事例라 하겠다.

한편 他人의 奴婢를 不法으로 숨겨놓고 私役을 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이같은 경우가 적발되면 他人의 奴婢를 私役시킨 者에게 罪를 물어 杖刑 百刑 徒3年刑에 處하였다.

당시 奴婢로서 그 누구이던間에 잘먹여주는 上典을 願하는 처지이었기 때문에 他人의 奴婢를 不法으로 숨겨놓고 私役을 시키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奴婢가 自己의 上典을 벗어나 他人의 집으로 숨어 들어가 그 집안 私役을 하여주기를 서슴치 아니하였던것을 미루어 보아 當時 一部 兩班家에서 奴婢들을 얼마만큼

註 141) 受敎輯錄 刑典 決獄日限條 參照.
142) 受敎輯錄 刑典 決獄日限條 參照.
143) 受敎輯錄 刑典 決獄日限條.
144) 受敎輯錄 刑典 決獄日限條.
145) 受敎輯錄 刑典 決獄日限條.
146) 新補受敎輯錄 刑典 用刑條.

혹사하였던가를 짐작케 한다.

이러한 奴婢가운데 免賤의 機會를 잡기 위하여 私鑄錢을 僞造한 경우 그 起行事實이 적발되면 그 匠人과 함께 斬刑에 處하였다.[147]

V. 結　　言

受敎輯錄은 經國大典을 母法으로 하여 大典後續錄의 未備點을 補完한 成文法典이다.

이 受敎輯錄은 壬辰倭亂과 丙子胡亂등 두차례에 걸친 國難을 克服하고 난후 編纂한 最初의 代表的인 法典이다.

壬辰倭亂과 丙子胡亂등 두차례에 걸친 國難을 겪고난 뒤이기 때문에 國防態勢 確立에 따른 軍備 整備에 대한 立法規定과 國難을 겪는 동안 人材의 發掘育成의 必要性은 科擧制度의 補完整備에 힘쓴흔적을 同法典의 立法規定에서 엿볼수 있다. 그리고 地方守令의 服務守則을 强化하였으며, 戶籍制度의 整備로서 百姓들의 脫役豫防에 힘쓴 흔적을 짐작케 한다.

당시 朝鮮王朝社會의 生產形態는 奴婢를 活用한 農業이 產業에 根幹을 이루었으며, 各種 生產過程에 있어서 위험한 作業은 모두 奴婢 勞雇에 의하여 行하여졌던 것이다. 그러므로 奴婢는 土地와 함께 朝鮮王朝 社會의 二大生產 要素로서 없어서는 아니될 財貨인 것이다.

奴婢가 土地와 함께 朝鮮王朝 社會를 代表하는 財貨이기에, 그 所有權에 대한 집착이 매우 컸으며 이에 따른 奴婢券의 僞造事件등 奴婢爭訟이 詞訟의 大宗을 이루었다.

奴婢爭訟은 原則的으로 3審이며 반드시 最終審인 3審은 刑事에서 行하도록 하였다.

註 147) 新補受敎輯錄 刑典 僞造條.